

광주지방법원 2024. 6. 18 선고 2022가단54881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등]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석 담당변호사 양차권

원고보조참가인 B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C

피 고 1. D

2. E

3. F

피고 1 내지 3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형관

4. 주식회사 G

변 론 종 결 2024. 5. 7.

판 결 선 고 2024. 6. 18.

주 문

- 원고의 피고 D, E, F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G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에 따른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D, E은 원주시 H 임야 2832㎡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 12. 20. 접수 제788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D, E, F는 공동하여 위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6. 9. 27. 접수 제5595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주식회사 G는 위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6. 9.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2006. 8. 28. 원고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J 명의의 계좌로 20,000,000원이, 2006. 9. 26. 원고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J 명의의 계좌로 94,000,000원이 이체되었다.

나. 2006. 9. 27. 자로 피고 주식회사 G(변경 전 명칭: 주식회사 L,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망 M(이하 ‘망인’이라 한다) 명의로 ‘망인이 피고 회사로부터 원주시 H 임야 28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14,000,000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다. 2006. 9.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6. 9. 2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망 M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그 후 망인이 사망하였고, 2019. 12. 20.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9. 11. 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D,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당사자의 자백,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 요지

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원고, 망인, 피고 회사 사이에, 원고와 망인이 매수자금을 1/2씩 부담하여 2006. 9. 27. 공동으로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되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었다(원고 주장에 따른 위 합의를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한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무효에 해당하더라도, 이 사건 합의에 포함된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6. 9.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 E, F에 대하여

이 사건 합의에 포함된 원고와 망인 사이의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므로, 2006. 9. 27.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에 해당한다. 따라서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 D, E, F는 공동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망인의 사망 후인 2019. 12. 20. 위 토지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 D, E은 이 사건 토지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던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 D, E, F에 대하여 위와 같은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바이다.

3. 판단

가.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망인, 피고 회사 사이에 이 사건 합의가 성립하였거나, 피고 회사와 원고 사이에 원고를 매수당사자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매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 D, E, F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 D, E, F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피보전채권)가 존재하는지는 소송요건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323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대위청구는 피보전채권의 부존재로 인하여 모두 부적법하다.

4. 결론

원고의 피고 D, E, F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하종민